

연구 노트

한국 가족농의 현대적 위상 경제위기와 농업·농촌문제

가토 고이치(加藤 光一)*

1. 머리말
2. 해방후 50년간의 농가변동 : 率家離農과 농촌해체화
3. 농지임대차의 현대적 형태
4. 논농사 농촌부락에서 본 소농·가족경영의 위상
5. 결론 : 경제위기하의 농업·농촌의 전망

1. 머리말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성격은 외자·외수형 재생산순환구조라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조하에서 편성되고 변모되어 온 한국의 농업·농촌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해방후 50년간이라고 하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농가변동을 농가인구의 유출과 이에 의한 농촌해체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여 확대되어 온 농지임대차관계, 노동력부족 상황 등을 다루고, 나아가 이

러한 분석에 근거, 한국 농업·농촌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구조문제와 관련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또 통계적 검증을 전제로 일반론만을 전개하면 현장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실시했던 구체적인 농가실태조사¹(1989년 가을부터 1997년 여름까지 실시했던 답작지역의 부락 전수조사)도 함께 다루면서 서술하고자 한다.

2. 해방후 50년간의 농가변동 : 率家離農과 농촌해체화

1945년 8월 15일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농지개혁을 헌법에 명기하였다. 하지만 농지

¹ 실태 조사했던 것의 일부는 拙著, 「アジア的低賃金の<基軸>と<周邊> : 日本と韓國の低賃金システム」, 日本經濟評論社, 1991년과 拙著, 「韓國經濟發展と小農の現代的位相 : NIEs型韓國資本主義と農業·土地問題」, 日本經濟評論社, 1998년을 참조바람.

* 日本 信州大學 農學部 教授

개혁법은 지주계급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으며, 그 결과 구체적으로 농지개혁법에 관한 제 법률의 공포가 이루어진 것은 해방후 5년이나 경과한 1950년 6월 23일이었다. 그러나 그 이틀 후인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농지개혁의 구체적인 실시는 아주 곤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매수·분배는 1951년 말에 형식적이거나 실시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².

2.1. 농가변동의 개관

해방후 약 50년간에 걸쳐 농가변동³에 대하여 <표 1>을 통해 조감해 보자. 이 표는 농민층분해라는 관점에서 농가구성의 기본적인 동향을 5년 간격으로 제시하고 있고, 기타 특징적이라고 생각되는 연차도 편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51년은 농지개혁후의 농업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연도이고, 62년은 농지임대차관련 지표가 「농가경제통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연도이다. 그리고 67년은 농가수가 최고치로 되는 연도이다. 여기서 부연해 두자면, 이 시기구분은 약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는 한국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시기구분에 거의 조응하고 있다. 어쨌든 이 표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동향을 시기적으로 총괄하자면 다음과 같다.

² 한국의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농지개혁사연구」, 1989년이라는 두꺼운 책이 나와 있지만(단 구체적인 사례분석은 적다), 농지개혁과정의 우여곡절에 대해서는拙稿, 「韓國「農地法」論爭의位相」, 北海學園大學開發研究所, 「開發論集」, 第54號, 1994年을 참조바람.

제 I 기(1951-62년) : 총농가호수 증대, 양극분해

제 II 기(1962-67년) : 총농가호수 증대, 전계층 상향운동, 농지임대차 확대

제 III 기(1967-75년) : 총농가호수 감소, 전계층 하강운동 속에서 중간층 비율의 증대, 상층농의 규모 축소.

제 IV 기(1975-85년) : 총농가호수 감소, 전계층 하강운동 속에서 중간층의 상대적 증대, 농지임대차 급증.

제 V 기(1985-96년) : 총농가호수 감소의 급속화, 양극분해, 새로운 경영주체 맹아

제 I 기는 농지개혁후 1951년부터 62년까지로 총농가호수가 증대하고 양 극층의 비중도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개혁을 실시하여 '자작농적 토지소유'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농가경제는 자급자족적인 현물경제이고 상품생산은 부차적인 것이었다(62년 「농가경제통계」에서도 농업수입, 농업경영비, 가계비의 현금비중은 30%대였다).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0.5ha 미만층은 자급자족용 쌀조차 조달할 수 없는 춘궁질량 농가였다. 이 때문에 농가부채는 필연적이었

³ 체계적인 분석을 했던 것으로서는 다음의 것이 있다. 倉持和雄, 「現代韓國農業構造の變動」, 御茶の水書房, 1994年. 朴珍道, 「現代韓國農民層分解の研究」, 東京大學 博士論文, 1987年. 지금 이 글도 이 두 개의 선구적인 체계서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농민층분해 없는 농가구성의 추이(다시 말해 분해 基軸을 확정하는 것)를 검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綿谷越夫방식이라고 불리는 것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 방식은 최하층으로부터 이농·탈농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상층에서도 突然이농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

표 1 해방후의 농가호수와 규모별 농가호수의 추이(실적과 구성비)

연도	총 수	(%)									
		0.5ha 미만	0.5-1.0	1.0-2.0	2.0-3.0	3.0ha 이상	0.5ha 미만	0.5-1.0	1.0-2.0	2.0-3.0	3.0ha 이상
1945	2,065,477	733,205	671,186	459,443	154,571	47,072	35.5	32.5	22.2	7.5	2.3
1951	2,183,930	932,615	781,910	372,970	93,401	3,034	42.7	35.8	17.1	4.3	0.1
1955	2,218,185	954,816	689,745	445,632	122,441	5,551	43.0	31.1	20.1	5.5	0.3
1960	2,349,506	1,008,624	706,689	485,933	141,371	6,889	42.9	30.1	20.7	6.0	0.3
1962	2,469,454	1,013,335	803,162	505,093	140,598	7,265	41.0	32.5	20.5	5.7	0.3
1965	2,506,899	900,845	793,864	643,305	139,599	29,291	35.9	31.7	25.7	5.6	1.2
1967	2,586,864	919,348	829,258	665,099	134,511	38,648	35.5	32.1	25.7	5.2	1.5
1970	2,483,318	858,912	824,347	639,369	123,391	37,299	34.6	33.2	25.7	5.0	1.5
1975	2,379,058	785,305	828,157	607,897	117,717	35,982	33.0	34.8	25.6	4.7	1.5
1980	2,155,073	639,575	745,579	674,197	107,559	31,163	29.7	34.7	31.3	5.0	1.4
1985	1,925,869	579,117	686,132	549,988	87,391	23,241	30.1	35.6	28.6	4.5	1.2
1990	1,767,033	506,506	544,457	543,027	129,510	43,533	28.7	30.8	30.7	7.3	2.5
1995	1,500,745	456,900	432,107	417,960	123,333	70,445	30.4	28.8	27.9	8.2	4.7
1996	1,479,602	465,432	421,356	404,897	117,564	70,353	31.5	28.5	27.4	7.9	4.8

자료: 1) 1945년은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31쪽 참조

2) 1951년 이후는 「농림통계연보」 각연도

3) 0.5ha 미만에는 '경종의 농가'도 포함

고, 게다가 고리채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자작농적 토지소유'는 형태만 유지되는 셈이 되었다. 이렇게 소작농이나 머슴이라고 불리는 농업노동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생산되었다. 당시의 도시는 노동시장이 전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농촌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토지집적과 주로 머슴을 고용했던 부농경영도 성립되었다(이것이 후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농지임대차관계의 '재생소작제' 논쟁을 일으킨다).

제Ⅱ기인 1962년부터 67년까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총농가호수의 증대가 계속되고, 전 계층적인 상향운동과 농지임대차관계의 확대되었다. 이것은 중농주의정책(단, 경지의 외연적 확대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지와 50년대에 비해 높은 농산물 가격을 인정하는

상대적 지지)과 관계가 있다. 그 결과 이 당시는 도시노동자의 평균소득보다도 농가소득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 계층의 상향운동 속에서, 특히 상층농이 그 지향이 강했다는 것은 이 계층의 실수 및 구성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해진다.

제Ⅲ기의 시작인 1967년을 정점으로 하여 총농가호수가 감소로 전환된다(직접적으로는 1967, 68년 연속된 흉작이 원인이다). 따라서 1967년부터 75년까지는 총농가호수의 감소, 하층농의 탈농화, 상층농의 규모축소라고 하는 전반적인 계층하향운동 속에서 중간층의 비중증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시기는 상대적인 '고미가정책'(1970-75년)과 '통일'계 품종에 의한 현저한 증산기(1973-77년)

였고, 그 결과 해방후 최고의 상대적 안정기였다. 동시에 이 시기는 외자도입·외수의존형의 공업화를 통해 자본재 및 원료를 수입하고 저임금으로 '가공수출'하는 섬유부문 기축(基軸)의 '외생적 재생산순환구조', 'NIEs경제화'가 확립된다. 이 때문에 '자립경제의 확립'이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서 세워진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첫 번째로 내세웠던 '식량자급'은 달성되지 못했고, 자급률은 오히려 더욱 떨어졌고, 쌀을 제외한 식량작물의 절대적 생산감소도 나타났다. 그리고 저임금 기반으로 농가노동력을 위치 지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층농을 중심으로 급격한 분해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영세한 소작농이나 불안정 겸업(상층농에 고용된 농업노동자)으로 농촌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일부의 임차농은 임차지의 매입으로 자작농화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표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소작농의 감소, 자작농비율의 증가, 겸업농가의 감소, 전업농가의 증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農工간의 불균형발전과 도시·농촌의 격차확대로 인해 하층농의 이농이 진행되고, 상층농은 고용노동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으로 경영을 축소하는 '상층농의 규모축소' 경향도 나타났다.

제IV기인 1975년부터 85년까지는 총농가호수 감소라는 경향을 기초로 전 계층의 하강운동 속에서 중간층의 상대적 증대, 그리고 농지임대차의 급속한 증대가 나타났다. 총농가호수의 감소, 고령농가의 증대로 인해 일부 상층농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중·상층농 중에서는 가족노동력에 맞추

어 경영규모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또 부동산투기와 인플레이 방어(hedge)를 목적으로 한 농지구입, 상층농지의 계속적 보유 등과 같은 형태로 도시거주자가 농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재지주'화도 한편에서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농지를 빌려서 규모를 확대하는 농가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는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가지출의 증대 사이에서 생기는 갭을 메우기 위한 성격의 것이었고, 결코 적극적인 형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소유지가 감소하지만 경영경지는 증대하는 특이한 형태가 생기게 된다.

제V기인 1985년부터 96년의 현단계까지는 총농가호수의 감소경향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양극분해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제I기의 양극분해와는 달리 기계화의 진전도 본격화되고 국가의 선별적 대규모 경영지원 대책 등으로 상층농이 실수, 구성비 양면에서 증대되고 있다. 특히 96년이 되면 구성비가 3.0ha 이상과 0.5ha 미만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 사이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인정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1986년에 제정되었다.

한편, 한국경제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미간의 무역흑자가 이루어지면서 시장개방압력이 증대되었다. 즉 88년 IMF 8조국으로의 이행, 89년 GATT 11조국으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일련의 중진국화·선진국화는 필연적으로 시장의 개방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농산물의 자유화(134품목)가 실시되고, WTO체제에 맞춘 쌀 수입개방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농지법」이

표 2 농가호수·농가인구의 감소

단위: 1000호, 1000인

연 도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65-95)
농가호수감소 (연평균)	24 4.8	104 20.8	224 44.8	229 45.8	157 31.4	266 53.2	1,006 33.6
농가인구감소 (연평균)	1,390 273	1,178 236	2,147 483	2,306 461	1,860 372	1,810 372	10,961 365.4
*세대유출	151	604	1,248	1,150	694	1,003	5,181
*단신유출	1,239	574	1,168	1,156	1,166	807	5,780
세대원수	6.31	5.81	5.57	5.02	4.42	3.77	5.15

주: *표시는 추계치로, '세대유출'은 세대원수×농가호수(감소), '단신유출'은 농가인구(감소)-세대유출.

자료: 「농림통계연보」, 각연도. 여기서 85년까지의 수치는拙著, 「아시아的低賃金の<基軸>と<周辺>」, 209쪽 참조.

1993년 12월에 제정되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으로서 보조금(선별적이고 직접적인 보조)이 확대되고, 일손부족 상황의 소농·가족경영을 대신할 새로운 경영주체로서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상으로 볼 때, 해방후 한국농가의 격렬한 변동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농촌해체, 일손부족, 농지황폐 등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이상의 농업해체상황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농업해체화는 일본 이상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압축형 경제발전'이라고 불려졌지만, 이것은 역으로 '압축형 농업해체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 소농·가족경영의 변모과정은 일본도 포함한 정책적인 공동행동(예를 들면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한 지역으로서 WTO 차기협상⁴에 공동 대응하는 것)

을 요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한국의 소농·가족경영은 내부로부터도 외부로부터도 가혹한 비판을 받는 입장에 서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요청 때문이다.

2.2. 농가호수·농가인구의 감소

한국 자본주의의 급격한 공업화가 진행된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저임금부분으로서의 농가노동력은 중요한 자본축적 기반이었다. 그 구체적인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표 2>에서 확인해 보자. 농가호수는 1965년부터 95년까지의 30년간에 약 100만호 이상이나 감소하고 있고, 실제로 농가호수가 피크에 달하던 67년과 비교하면 약 40%의 농가가 농촌지역으로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이의 변동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양식으로 규정된 시기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농가호수와 농가인구의 약 1할 면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⁴ WTO의 차기협상에서 한국의 쌀 시장에 대해 관세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쌀의 MMA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적 주석인 쌀의 '자급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등을 경제위기하의 아시아라는 측

'이상이 유출되게 된 것은 70년대 후반 이후 부터였다. 60년대부터 70년대 전반까지의 공업화는 경공업(섬유부문 기축)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단신유출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75년 이후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화는 본격적인 솔가이농을 초래했다. 그렇기는 해도 한국 자본주의의 경기순환에 규정받으면서 단신유출과 세대유출이 서로 병행하여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은 70년부터 85년에 걸쳐서이다. 이 시기에 소위 농촌과잉인구가 기본적으로는 정리되었다고 생각해도 좋다(이것은 또한 세대원수의 감소에서도 나타나 있다).

두 번째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초기에는 단신으로 유출되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그들이 도시에서 일정한 취직자리를 찾아내고 남은 세대원을 불러들이는 솔가이농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재택형 겸업이 가능한 공장입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입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와 깊이 결부된 두터운 중소하청구조를 가진 형태는 아니었고 풀세트형의 재벌에 둘러싸인 형태였다. 그것도 대개는 국제적 하청의 OEM(상대편 브랜드 생산)부품조달 방식이 많았기 때문에 원료도 노동력도 현지에서 조달할 필요성이 없는 형태로서 성립되어 있었다(노동시장이 대도시와 일정한 공업단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실 85년 이후에는 농촌지역으로의 공업배치도 일정 정도 추진되었지만 그 때에는 이미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87년 6월 29일의 민주화선언 이후 고임금구조가 정착되어 기업이 농촌지

역으로 진출하는 최대의 장점이었던 저임금이 없어지고, 대신에 아세안이나 중국으로 진출하는 편이 낫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농촌은 순식간에 1호당 세대원수가 3.77명으로까지 감소하고 고령화도 나타나 농촌해체의 위기적 상황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신유출은 감소하지만 세대유출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표 3>에서 처럼 농가인구와 농촌취업인구의 연령계층별 구성으로 확인해보자. 70년에는 농가인구율이 44.4%, 농업취업인구율이 50.4%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에는 각각 약 1할대인 10.9%와 12.2%까지 감소하고 있다. 그 연령별 구성도 60세 이상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농촌으로 되어 일본의 고령화농촌에도 뒤지지 않는 농촌해체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해체의 진행이 일본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는 한국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한국의 가계 제도⁵와 관련되어 있다. 관습적으로 한국에서는 장남이 결혼하면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보통이고, 만약 농촌에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농지규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모는 장남과 동거한다. 여기서 가업을 이어간다고 하는 생각은 희박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장남이 해야만 하는 것은 제사권의 계승과 부모

⁵ 한국 가계(イエ)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拙稿, 「チブ(집)とマウル(마을)の經濟學」(上), 「北海學園大學經濟論集」 第41卷 4號(1994), 그리고 拙稿, 「東北庄内地方の農家・韓國全羅北道の農家」, 日本村落研究學會 編, 「家族農業經營その日韓比較」, 農文協(1993)을 참고 바람.

표 3 농가인구와 농업취업인구의 연령계층별 구성

단위: 1000인,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 농가인구 (농가인구율)	14,422 44.4	13,244 37.5	10,827 24.0	8,541 20.8	6,661 15.5	4,851 10.9
13세 이하	6,271 (43.5)	4,780 (36.1)	3,280 (30.3)	2,114 (24.8)	1,370 (20.6)	680 (14.0)
14-19	1,497 (10.4)	1,980 (15.0)	1,684 (15.6)	1,271 (14.9)	734 (11.0)	423 (8.7)
20-49	4,404 (30.5)	4,212 (31.8)	3,701 (34.2)	2,830 (33.2)	2,259 (33.9)	1,626 (33.5)
50-59	1,107 (7.7)	1,108 (8.4)	1,074 (9.9)	1,129 (13.2)	1,111 (16.7)	867 (17.9)
60세 이상	1,143 (7.9)	1,164 (8.8)	1,138 (10.5)	1,177 (13.8)	1,187 (17.8)	1,255 (25.9)
2. 농업취업인구 (농업취업인구율)	4,846 50.4	5,339 45.7	4,654 34.0	3,733 24.9	3,237 17.5	2,541 12.2
15-19세	639 (13.2)	616 (11.5)	229 (4.9)	69 (1.8)	20 (0.6)	5 (0.2)
20-29	894 (18.4)	943 (17.7)	720 (15.5)	499 (13.4)	201 (6.2)	83 (3.3)
30-39	1,260 (26.0)	1,177 (22.0)	898 (19.3)	681 (18.2)	494 (15.3)	324 (12.8)
40-49	1,058 (21.8)	1,180 (22.1)	1,309 (28.1)	997 (26.7)	700 (21.6)	504 (19.8)
50-59	686 (14.2)	962 (18.0)	979 (21.0)	924 (24.8)	1,056 (32.6)	708 (27.9)
60세 이상	309 (6.4)	461 (8.6)	520 (11.2)	564 (15.1)	766 (23.7)	917 (36.1)

주: 1) 농가인구율은 한국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농업취업인구율은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확하게는 농림수산업취업인구이다. 단 임업은 극히 적고, 수산업인구도 1% 이하이다.

자료: 1은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와의 동거뿐이다. 이런 점도 솔가이농 형태를 만들어내고, 또 농촌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양식이 한편에서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가계제도가 규정하여 농가호수·농촌인구의 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3. 농가경제의 추이

다음에서는 가족경영을 둘러싼 농가경제의 추이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자(표 4 참조).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농가경제도 절대치로서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내실이 문제가 된다. 농가경제의 동향을 보는 것으로 한국 가족경영의 가치·

가격관계가 가진 일 측면, 다시 말해 가족경영의 존재형태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진다.

첫째, 소득구조가 어떤 형태로 변했는지를 보자. 농업소득률은 65년 당시 76.6%에서 75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여 80.2%가 되었다. 이를 통해 이 단계까지는 대부분이 전업농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부터 점차로 비율이 낮아져 95년에는 65.4%까지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이외의 겸업소득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문제가 된다. 한국의 통계에서는 농외소득 중 사업소득이 소위 일본적인 표현의 자영겸업에 해당되고, 사업외소득이 고용된 겸업에 해당된다. 한국에서 이 자영겸업의 구성비는 약

간의 변동은 보이지만 계속 저하되고 있다. 넓게 보아 겸업소득은 공업화로 겸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1965년 당시 사업외소득이 48.9%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 단계에서 47.7%이기 때문에 구성비로서는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농촌지역로의 공업배치가 가진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고, 일본적인 채택겸업이라는 형태를 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구이농의 형태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이전소득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전소득의 내역은 ①송금보조, ②피증보조사례, ③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 4>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②의 피증보조사례이다. 이것은 한국의 가계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친척이나 지연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표 4 가족경역을 둘러싼 농가경제의 추이

단위: 1000원,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농업소득		88.8	194.0	714.8	1,754.8	3,688.9	6,263.9	10,469.1	
(농업소득률)		76.6	78.2	80.2	74.9	67.5	69.0	65.4	
농외소득		23.5(100.0)	61.9(100.0)	158.1(100.0)	938.3(100.0)	2,037.8(100.0)	4,761.9(100.0)	11,333.5(100.0)	
	사업소득	3.9(16.6)	9.6(15.5)	21.9(13.9)	66.6(7.1)	214.4(10.5)	588.9(12.4)	1,526.5(13.5)	
	사업소득외	11.5(48.9)	30.7(49.6)	84.4(53.4)	489.0(52.1)	845.6(41.5)	2,251.9(47.3)	5,404.3(47.7)	
	이전소득	8.1(34.5)	21.6(34.9)	51.8(32.8)	382.7(40.8)	977.3(48.0)	1,291.1(40.3)	4,402.7(38.8)	
농가소득		112.2	255.8	872.9	2,693.1	5,736.2	11,025.8	21,802.6	
가계비		100.0	207.8	616.3	2,138.8	4,690.9	8,227.2	14,781.9	
가계비 총족률(농업소득/가계비)		88.8	93.4	116.0	82.0	78.9	76.1	70.8	
농업 경 영 비	자재비	종묘비	1.5(5.6)	1.6(3.0)	6.3(3.6)	26.8(4.6)	71.5(4.0)	122.1(4.3)	269.9(4.9)
		사료비	8.3(31.1)	10.1(18.7)	27.0(15.3)	59.1(10.1)	192.3(10.8)	200.6(7.1)	345.2(6.2)
		농약비	0.5(1.9)	2.3(4.3)	13.3(7.6)	47.2(8.0)	123.6(7.0)	187.5(6.7)	349.6(6.3)
		가구비	0.4(1.5)	1.8(3.3)	8.3(4.7)	42.6(7.3)	158.2(8.9)	332.6(11.8)	807.4(14.6)
		광열비	0.1(0.4)	0.4(0.7)	1.7(1.0)	14.9(2.5)	43.3(2.4)	54.7(1.9)	146.2(2.6)
		양축·양잠비	1.3(4.9)	5.0(9.3)	23.4(13.3)	80.6(13.7)	365.2(20.5)	547.8(19.5)	1,809.1(32.6)
		자재원료비	0.3(1.1)	1.3(2.4)	5.8(3.3)	36.5(6.2)	93.7(5.3)	154.7(5.5)	411.8(7.4)
	소 계	12.4(46.4)	22.5(41.7)	85.7(48.7)	307.7(52.4)	1,047.9(58.9)	1,599.9(56.9)	3,591.4(64.8)	
	노동비	7.6(28.5)	13.6(25.2)	37.1(21.1)	107.0(18.2)	206.6(11.6)	281.4(10.0)	441.1(8.0)	
	임대료, 水利비	농지임대료	2.0(7.5)	5.8(10.7)	15.4(8.7)	68.9(11.7)	270.7(15.2)	477.2(17.0)	670.8(12.1)
		기타임대차료	1.0(3.7)	2.8(5.2)	14.1(8.0)	36.7(6.2)	89.7(5.0)	217.2(7.7)	399.4(7.2)
		水利비	1.1(4.1)	3.0(5.6)	5.0(2.8)	18.8(3.2)	35.6(2.0)	14.0(0.5)	29.2(0.5)
	소 계	4.1(15.4)	11.6(21.5)	34.5(19.6)	124.4(21.2)	396.0(22.3)	708.5(25.2)	1,099.4(19.8)	
	기타 농업지출		2.6(9.7)	6.3(11.7)	18.8(10.8)	48.3(8.2)	127.5(7.2)	224.2(8.0)	410.8(7.4)
합 계		26.7(100.0)	54.0(100.0)	176.1(100.0)	587.4(100.0)	1,778.0(100.0)	2,814.1(100.0)	5,542.6(100.0)	
농가부채		11(100.0)	16(100.0)	33(100.0)	339(100.0)	2,024(100.0)	4,734(100.0)	9,163(100.0)	
	제도자금	3(27.3)	6(37.5)	12(36.4)	173(51.0)	1,440(71.1)	4,078(86.1)	8,364(91.3)	
	개인	8(72.7)	10(62.5)	21(63.6)	166(49.0)	584(28.9)	666(23.3)	799(8.7)	

자료: 농림부 「농가경제통계」, 각연도

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①송금보조는 외부로 나간 세대원이 집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그 구성비는 85년 이후가 되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⁶. 이것도 한국의 가계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경영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가계비와 농업경영비의 동향을 확인해 보자. 1965년 이후 농업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고 있는 연차는 75년밖에 없다. 물론 경영규모별로 보게 되면 상층농가는 충당하고 있다. 한편 농가소득 전체로 보면 가계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실이 문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했던 ‘사업 외소득’ 중에는 ‘농업 노임’, ‘기타 노임’, ‘급료’, ‘농지임대료’, ‘기타 임대료’, ‘배당이자’, ‘폐품수입’, ‘가사 잡수입’ 등과 같이 성격이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이 중에서 ‘급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년대 이후에는 40%대로 떨어져 있다. 실제로 농가조사를 해본 결과로도 농가경제잉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적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 농업경영비의 동향으로 그 경영실태를 살펴보자. 현재 농업경영비 중에서 노동력은 자가노동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고용노동 내지는 일시적 고용에 수반된 비용이다. 한국농업은 고용노동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말해지지만, 그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반면 기계화가 80년대 이후부터 진전되어 농구비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농지임대차관

계가 폭넓게 진행된 80년대 이후는 농지임대차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95년 단계가 되면 그 비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이동이 진전되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전의 ‘소농간 지대경쟁’에 의한 高地代가 완화되어 농지임대차시장에서 밀리는 사람이 우위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농가부채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자. 상술했던 것처럼 가계비조차 농가소득에서 충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농가조사를 할 때마다 항상 직면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농가가 생활자금조차도 빚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그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조사를 거듭하면서 얻은 결론은 한국의 가족경영이 소상품 생산자이기는 하지만, 소위 일본적인 ‘자작농 구조’(일정의 수입에 맞추어 지출 내지 투자를 하는 형태)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가계와 경영이 혼재되어, 이것이 점점 ‘부채’ 체질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특징적인 것은 예전의 부채는 사채 의존도가 높았지만, 80년대 이후 제도금융이 정비된 이후부터는 여기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2.4. 한국 농업·가족경영의 제 특징

지금까지 주로 통계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농업, 가족경영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았다. 중요한 특징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자본주의는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업을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⁶ 95년의 ‘이전소득’을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송금보조 76,000원, 被贈補助謝禮 3,468,500원, 퇴직금 22,800원이다. 『농가경제통계』, 1995년판.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희박해진 1985년 이후에도 급속한 추세로 농업위기, 심지어 농촌해체의 상황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그 의미에서 말하자면, 일본의 농업해체와 농촌해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공업부문에서의 압축형 경제성장이, 신고전과 경제학 방법에 의한 개발경제학이 말하는 것처럼, 농업에도 압축형 성장⁷을 가져다주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일본 이상의 농촌해체를 진행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농가변동 내지 농가인구 등의 추이를 보면, 한국은 솔가이농 형태이고, 이것이 동시에 농촌 해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셋째, 기본적인 농업통계로부터도 확인되듯이, 한국의 가계제도가 가족경영의 존속을 돕는 동시에, 쇠퇴에도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넷째, 한국의 가족경영은 '타인을 위한 사용자치 생산'이라고 하는 소상품 생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본적인 가족경영과는 달리 아주 특수한 한국적 가족경영이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볼 때, 여기에 한가지 첨부해 둘 것이 있다. 그것은 이러한 특징들이 일본·한국·대만의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되는 농지개혁과 그것에 의한 광범한 소농·자작농의 창출과정을 단순히 일률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차근차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초하여 각 나라가 가진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차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3. 농지임대차의 현대적 형태

이상의 경과와 상황을 기초로 한국 가족경영의 농업구조문제 중 하나인 농지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농지임대차관계는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한국자본주의논쟁(=아포리아, 어떤 명제에 대하여 두 가지 대립된 결론이 있는 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중요한 논점(소위 '재생소작제'론)으로서 거론되었던 경과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지임대차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전전(戰前) 식민지하의 재생소작제(전후 일본의 지주제 부활론과 유사)라고 보는 생각은 뒤로 물러나고, 한국 경제발전과정 속에서 나오고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조응하는 과도적 형태의 '소농적 차지 형태'라고 보는 것이 대개 일반적인 정설로 되어 있다⁸. 그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자.

3.1. 농지임대차의 전개

임차지율의 추이를 <표 5>를 통해 살펴보면, 1960년대 초반에 14% 정도였던 것이 점차로 증가, 70년 17.6%, 80년대 전반 20%대, 85년 30.5%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94년

⁷ 그 점을 검토했던 선구적인 연구로서는 梶原弘和·金昌男, 「日韓 農業の投入産出構造 - 壓縮型 農業發展の考察」, 朴宇熙·渡辺利夫 編, 「韓國の經濟發展」, 文眞堂, 1983年이 있다.

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편, 「한국농업문제의 이해」, 한길사, 1990년, 55-83쪽의 「토지개혁」, 「이호철」, 「소작제」(장상환), 「농지가격」(소순열)을 참고하기 바람. 그리고 한국자본주의 논쟁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책이 있지만, 앞에서 제시한 拙稿, 「韓國資本主義의 構圖」(中)에 약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람.

표 5 임차지율 및 추정임차지의 추이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소작지율 (%)	14.1	14.6	13.8	16.4	16.0	16.7	17.3	17.9	17.6	17.6	16.7	14.9	13.2	13.7	14.1	18.2	19.8
총경지 (천ha)	2,063	2,080	2,171	2,256	2,293	2,312	2,319	2,311	2,298	2,272	2,242	2,241	2,238	2,240	2,238	2,231	2,222
추정총소작지 (천ha)	291	304	300	370	367	386	401	414	404	400	374	334	295	307	316	406	440
총농가호수 (千戶)	2,469	2,416	2,450	2,507	2,540	2,587	2,579	2,546	2,483	2,482	2,452	2,450	2,381	2,379	2,336	2,304	2,224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	1991	1992	1993	1994	1995
소작지율 (%)	19.8	21.3	22.3	25.0	26.8	28.3	30.5	31.5	31.1	34.8	36.5	37.4	37.4	37.2	39.4	41.2	42.2
총경지 (천ha)	2,207	2,196	2,188	2,180	2,167	2,151	2,144	2,141	2,143	2,138	2,127	2,109	2,091	2,070	2,055	2,033	1,985
추정총소작지 (천ha)	437	468	488	545	581	609	654	674	666	744	780	789	782	770	810	838	838
총농가호수 (千戶)	2,162	2,155	2,030	1,996	2,000	1,974	1,926	1,906	1,871	1,826	1,772	1,767	1,702	1,641	1,592	1,558	1,501

주: 추정총임차지는 총경지×임차지율이기 때문에 실제의 총임차지는 다르다.

자료: 임차지율은 「농가경제통계」 각연도, 총경지 및 총농가호수는 「농림통계연보」 각연도

이후에는 40%대로, 95년 현재 임차지율은 42.2%까지 증가하고 있다. 농지개혁후의 51년이 8%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사이에 약 5배나 확대된 셈이다. 또 총경지의 4할 이상이 농지임차지라는 것을 볼 때 차지농업 형태가 일반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본주의적 차지 형태'인지, 아니면 '소농적 차지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본다. 대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자는 아니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후자인 '소농적 차지 형태'이다.

이 과정을 김성호씨는 지가이율을 기초로 상대지가와의 관계 등도 감안하여,

1951-67년 : 소작지주제의 부활(고지가단계)

1967-74년 : 소작지주제의 쇠퇴(저지가단계)

1974년 이후 : 자산적 지주제(고지가단계)

라고 규정하고 있다⁹.

여기서 말하는 '소작지주제'란 예전의 지주 소작관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았던 '재생소작제', 즉 해방전 식민지 시대의 지주소작관계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보면 대개 74년 단계까지는 '재생소작제'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해도 좋은지 어떤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해방전의 색깔을 띤 측면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한국의 농지개혁이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여 불철저¹⁰했기 때문

⁹ 前掲書, 「농지개혁사연구」, 1112쪽.

¹⁰ 한국의 농지개혁이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여 불철저하게 끝나버렸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생지주제의 역사 단계적 차이가 다르고 그것에서도 출된 상품생산자로서 농민의 주체적 역할이 다르다(농민운동의 차이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농지개혁주체의 성격과 실시과정에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점령군의 의식, 한국의 경우는 농지위원회 구성 등에서 생긴 차이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에 농지개혁 후 농지이동의 대부분은 예전에 소작인 내지 농업노동자(농지개혁 후에는 영세하지만 '자작농적 토지소유'로 되었던)였던 층에서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농촌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래의 소작인 내지 농업노동자로 다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개혁후의 50년대는 대개 '재생소작제'였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60년대 이후 소작지의 증대는 자작농의 소작농으로의 전락, 그것도 단순히 소작농으로의 몰락과정이 아니라 자작농이 임차지를 통해 규모를 확대시키는 '自小作前進'이었다. 즉 자작지도 소작지도 늘리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62년도부터 시작된 '개간촉진법' 등에 의해 총경지면적의 대폭적인 증대가 이루어졌다. 그 증가부분에서 자작지와 소작지의 비율은 대개 1 대 1.4였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재생소작제'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까지는 일시적이지만 임차지율이 예외적으로 약간씩 낮아지고 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영세한 임차농의 대량이농, 그것에 기초한 임차지의 지주로의 반환, 그리고 일부 임차농의 매수를

통한 자작농화(이 시기의 상대적인 '고미가'로 유지된) 등이 이러한 예외적인 임차지율 저하를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70년대 후반 이후에 전개되는 임차지율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대량의 이농→대부지의 증대→임대차 관계의 증대라고 하는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시기의 임대차관계에 대해 앞서 보았던 것처럼 '자산적 지주제'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 내부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산적 지주제'라고 하는 말만으로 판단하자면, 농지의 '사용가치' 측면보다도 '교환가치' 측면이 강조되고, 자산수익(capital gain)이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사실 도시근교에서는 지가폭등의 영향을 받아 대규모 택지개발, 공공전용 등에 의한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없을 리는 없다. 하지만 고지가 압력과 관계가 없는 지역에서의 농지임대차 전개는 설명할 수 없다.

한편 1986년에는 농정당국에 의해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의 제정이 늦어져 실제로 시행되었던 것은 1990년 9월부터였다. 그것이 곧바로 농촌현장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지율이 대폭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 추정 총임차지 면적에서도 적어지고 있고, 또한 94년부터는 면적 그 자체도 정체가하고 있다. 게다가 「농지임대차관리법」을 흡수하고 구조정책부분도 도입했던 「농지법」이 1994년 12월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농지임대

농지위원회가 소작인의 이해를 반영할 수 없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지주 소작지의 21.6% 밖에 분배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분배농지(해방농지)의 상환부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 대해 한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논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개혁 후에 창출된 '자작농'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계되어 있다. 앞서 제시한 이호철, 「토지개혁」,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편, 「한국농업문제의 이해」에는 각 연구자의 일람이 표로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바람.

차의 현대적 형태를 몇 개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검토한다.

3.2. 농지임대차의 현대적 형태 : 임대인(지주) · 임차인(소작)의 성격과 소작료 수준

<표 5>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이렇게 높은 임대차율은 기본적으로 '소농적 차지형태'이다. 표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경지소유별 농가의 동향에서도 절반 이상은 자소작농(自小作農) 형태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분명 '소농적 차지형태'이다.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농업기계화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계층에서도 차지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단 그러한 상층부도 임차료를 지불한 후에도 이윤범주가 성립되는 '자본주의적 경영'은 결코 아니고, 그 규모 확대요인도 적극적인 전개라기보다 오히려 '소극적인' 대응이 많다.

그러면 약간 번잡해지지만 구체적인 조사 사례¹¹를 기초로 이를 확인해보자. <표 6>은 1995년에 조사했던 전라북도 김제시 D부락(里)의 농지임대차관계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마을의 총농가호수는 29호로 평균적인 부락 규모이다. 농가구성은 3ha 이상층 5

호(17.2%), 2-3ha층 9호(31.0%), 1-2ha층 4호(13.8%), 0.5-1.0ha층 6호(20.7%), 0.5ha 이하층(완전 임대농가도 포함) 5호(17.2%)이다. 그리고 논농사비율이 거의 97%나 되는 지대이다. 또 땅을 빌려쓰고 있는 농가는 3ha 이상층 3호, 2-3ha층 4호, 1-2ha층 1호, 0.5-1.0ha층 2호로 총농가 29호에 대해 차지농가 10호이기 때문에 차지농가율은 34.5%이다. 반대로 땅을 빌려주고 있는 농가는 3ha 이상층 1호, 2-3ha층 1호, 0.5ha 이하층(완전 임대농가도 포함) 3호이기 때문에 임대농가율은 17.2%이다.

<표 6>과 이 마을의 특징을 통해 농지임대차관계의 기본적인 동향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농지임대차관계에서 상층=임대인, 하층=임차인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고 전 계층에 걸쳐 임차형태가 존재한다. 또 부락 내에서 농지임대차 균형이 성립하는 부락완결형이 아니고, 부락의 즉 부재지주가 주로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등 한국 전체의 움직임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친척관계가 기본적으로 많다. 셋째, 임차료는 定租法 형태이고 돈으로 환산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현물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임차료가 극히 높다(50-57%).

이와 같은 동향을 기초로 농지임대차의 현대적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임대인(지주), 임차인의 성격과 임차료 수준 측면에서 정리해보자.

우선 임대인(지주)은 농민지주와 비농민지주가 있고, 전자는 대개 고령으로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농업 외의 겸업농가인 경우가 많다. 또 비농민지주의 경우에도 이농한

¹¹ 필자는 지금까지 1989년부터 거의 매년 한국의 농촌·농가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김제시(예전의 김제군)는 주요한 조사 현장의 하나이다. 이 지역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논농사지대로 1호당 경영규모가 극히 높은 지역이고, 또한 해방전에는 일본인지주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이용하는 조사사례는 전술했던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시기의 농업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여러 통계의 기간(1995년)과 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표 6 전라북도 김제시 D부락의 임대차관계 실태(1995년 8월)

농가 번호	貸借	면적 (평)	연차	임대인과의 관계	임차료 형태	임차료(A) kg/마지기	수확량(B) kg/마지기	임차료율 (A/B, %)
1	借	3,508	87	부친으로부터, 연간생활비로 400만원을 주고 있다.				
1	借	856		원래 이 마을에 살았지만 지금은 전주에 나가 있다. (이농)	定租法	160	280	57
1	借	5,197		고모의 시댁이고, 현재는 안양시에 있다.(10년전 이농)	定租法	160	280	57
1	貸	1,500		원래 밭이지만, 현재는 복숭아농장이고 전주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연간 80만원		
4	借	2,400		동생(현재 서울거주)에게서 빌리고 있다.	定租法	160	280	57
4	借	2,400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가 필요한 만큼 주고 있다.				
4	借	2,400		동생(서울에 있는 막내)의 것이다.	定租法	140	280	50
5	借	1,200		친척.	定租法	140	280	50
6	借	1,200		동생(현재 서울거주).	定租法	160	280	57
7	借	1,200		현재 전주시에 살고 있고, 단 40년 전에 이농했다.	定租法	160	280	57
7	借	1,200		지주는 서울에 있지만 소작료는 그 여동생(부락내)에 게 내고 있다.	定租法	160	280	57
13	貸	4,800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다.	定租法	100	280	36
14	借	2,400		인근 사람으로 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빌려주었다.	定租法	160	280	57
14	借	1,200		전주에 사는 사람이다.	定租法	160	280	57
18	借	1,200		인근 사람으로 노동력부족 때문에 빌려주었다.	定租法	160	280	57
19	借	2,400		서울에 사는 친척의 것이다(상속지).	定租法	160	280	57
20	借	1,800		하천변에 있는 국유지.		연간 8만원		
26	貸	7,200		인근 사람.	定租法	160	280	57
28	貸	1,200		인근 사람5	定租法	16	280	6
29	貸	3,600		자식에게 빌려주고 필요한 만큼 받고 있다.				

주: 1) 1마지기는 200평.

2) 수확량 및 소작료는 쌀로 환산하고 있다(단, 精米기준).

사람의 토지나 상속에 의한 농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산가치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농지소유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임차료는 현물로 지불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농한 사람의 식탁에도 오르게 된다.

임차인의 경우도 상층농가만이 임차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계층에 모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자본주의적인 차지형태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소농적인 차지형태로 상층농도 중간층도 모두 '빌려서

늘려나가는' 차지형태인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소작료수준은 50-57%로 극히 높다. 이 고율임차료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 특히 차지가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설명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임차인시장에서 이런 고율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지기는 한다. 하지만 이 임차료가 이농한 사람의 식탁에 오르기도 하고, 또는 고령농가의 농촌에서 생활을 지탱하는 생활

비라는 의미에서도 경제학적인 설명은 가능하지 않다. 바로 여기에 오히려 중요한 의미가 존재한다. 즉 이런 이유에서 임차료는 한국의 가계제도나 농촌부락의 '마을' 논리, 혹은 상호부조적인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농지임대차의 현대적인 형태는 결코 '자산적 지주제'가 아니고, 오히려 가족경영적인 '소농적 차지형태'라고 성격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논농사 농촌부락에서 본 소농·가족경영의 위상

다음에서는 한국의 소농·가족경영이 어떠한 형태로써 정책적으로 위치설정되고 있으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1997년 여름 단계에서 조사했던 사례도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책적으로 상술했던 바와 같은 농가 변동으로 인해 고령화,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구조정책이 다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WTO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농가 내지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이다. 이 점에서는 일본의 농정기조와 일치하고 있다. 때때로 일본의 연구자는 한국의 농촌을 관광적 답사조사를 한 후 '시간지체(time-lag)론'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현실에서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한국의 특수성(농가변동의 차이, 농가구성의 차이, 가계제도·마을제도의 차이 등)이 존재한다.

4.1. '새로운 경영주체'로 등장한 농업법인의 현실

WTO체제에 대응한 한국판 '농정개혁'은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처음으로 구조정책, 구체적으로 농지유동화, 대규모 농가·법인의 육성 등을 내세우면서 출발했다. 이를 위한 법률로서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가적인 지원책을 재정적으로도 보장하였다.

이 법의 제6조와 제7조는 각각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설립자격은 농업인 및 농산물 생산자단체이다. 출자제한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고, 조합원은 어디까지나 농업인만이 자격을 가진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명확하게 농업인 외의 출자를 인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법인의 농지소유는 각각 인정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 주식회사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농업법인이 한국 농업의 '새로운 경영주체'로서 상정되고, 정책적으로 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부터 설립되어 96년 말 현재 영농조합은 3,487법인, 농업회사는 1,419법인으로 합계 4,906법인이 존재하고 있다. 수치로 보면 일본 농업생산법인의 총수가 4,150개(1995년)이기 때문에 일본보다도 많다. 또 이들 법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금액은 1991-96까지의 합계로 9,42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법인이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997년 여름에 조사했던 보고서¹²로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앞서 제시했던 것처럼 정책지원금액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융자된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을 묻는 질문항목에 대해 '기한 내 상환가능' 21.84%, '현재는 가능, 장래는 불투명' 8.05%, '현재는 불투명하지만 개선될 가능성' 29.86%, '장래 불투명, 적기상환 불가능' 25.29%, '기타' 25.29%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농업법인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 존재인지 극히 의심스럽다.

또 농업법인의 발전방향을 묻는 질문항목에 대해 '생산협동체로서 독립적인 사업화' 11.49%, '출자농가를 도와서 소득향상에 기여' 11.49%, '지역농업발전으로의 기여' 74.71%, '기타' 2.3%로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바꾸어 말하면 고령화·일손부족이라는 현실에 법인이 지역 담당자로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32.18%, '규모축소' 12.64%, '규모확대' 55.17%로 되어 있다. 확대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현상유지나 규모축소를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규모축소라고 답한 것이 25%나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전망했던 '새로운 담당자'로서의 가능성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일본의 농업생산법인보다 수가 많다는 것도 반영되어, 단기간에 법인이 과열적으로 설립된 것에 대한 반성도 나오고 있다. 현실에서는 폐점 휴업한 법인도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인의 과열적인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당' 14.94%, '축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59.77%, '좀 더 설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12.64%, '기타' 12.64%로 되어 있다. 이처럼 법인수를 축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쪽이 6할이나 존재한다.

결국 정책당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농업법인에 전망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의 가족경영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고, 그 보완적인 조직으로서 생각하는 쪽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조사과정에서 다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농업법인, 특히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답작지역 부락에서 농가구성, 가족경영이 어떤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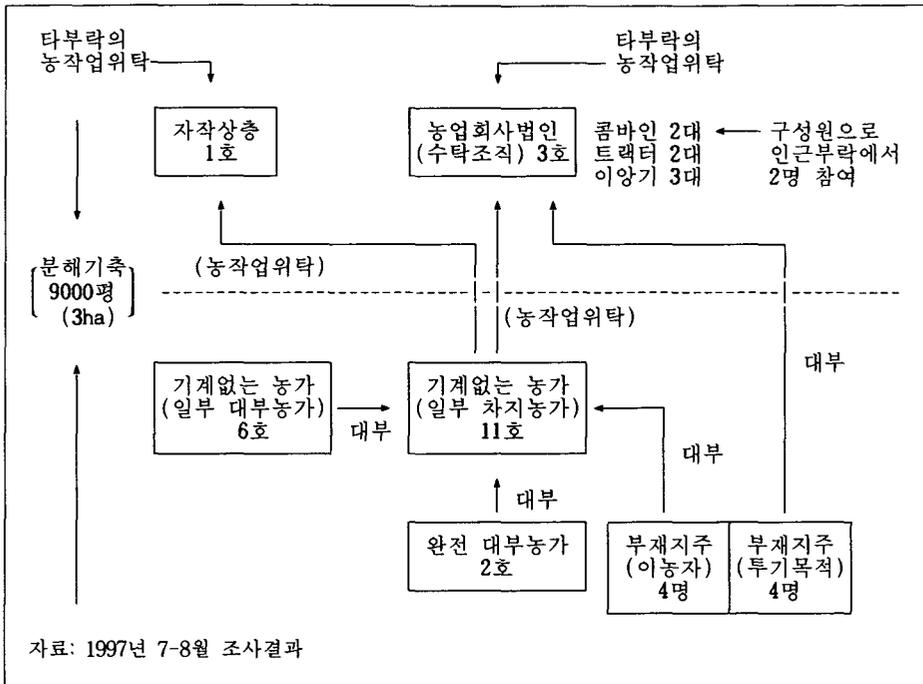
4.2. 답작지역 S부락의 농가구성

다음 그림은 1997년도 여름에 실시한 김제시 S리의 농업구조와 농가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개념도로 정리한 것이다. 이 부락은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거기서 가족경영의 존재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농업·농촌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조사대상부락은 자연부락이고, 10년 전에는 농가호수가 33호였다. 그러나 현재는 비농가를 포함하여 23호로, 10호가 가구단위로 이

¹² 조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 67개소, 농업회사법인 20개소로 합계 87개소이다. 김정호 외,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그림 1 전라북도 김제시 S리의 농업구조 및 농업구성 개념도



농하였다. 현재 상층농 3호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과 자작상층농 1호가 경작면적 3ha 이상의 소위 상층농가군이다. 그리고 '기계 없는 농가(일부 임대농가)' 6호, '기계 없는 농가(일부 차지농가)' 11호, '완전 임대농가' 2호 등으로 이루어진 농가군이 있다. 이 마을은 양극 분해적인 농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기계 없는 농가'는 소위 농작업을 위탁한 후 농작물의 비배 관리만을 직접하고 있는 농가이다. 그 중에는 '땅을 빌려쓰고 있는 농가'도 다수 존재한다. '완전 임대농가'는 고령농가와 공무원이다. 여기서 계층분해의 지표는 경지면적규모라고 하기보다도 농업기계화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라고 생각된다.

상층농 3호의 농업회사법인은 인접 부락의 2호와 공동으로 만든 기계화영농법인 형태로

출발했다. 이것은 농지법의 제정과 UR대책으로 기계화영농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조금이 주어졌기 때문에, 트랙터·콤바인·대형이앙기 등의 기계화 일관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농작업수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농작업위탁을 하고 있는 농가는 기계를 일체 소유하지 않고, 오로지 비배관리만을 스스로 하고 있다. 이 마을은 경지정리도 진행되어 1필지당 1200평(40a)으로 비교적 농작업이 쉬워 대규모 농가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다. 그렇지만 농가 중에서 일부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임대하지도 않으면서도 기계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과 동일한 규모의 농가에 대부하고 있다. 어찌서 규모확대를 하고 있는 농가에 빌려주지 않고 동일

한 규모, 그것도 기계 없는 농가에 빌려주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첫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토지를 망친다는 생각이 있고, 둘째 임대차관계가 친척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부채지주, 그것도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회사법인에게 빌려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정책당국이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회사법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을의 농업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인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된 측면이 강하고, 농업기계를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도 있다. 또한 현실에서는 '농작업의 수탁' 밖에 없고, 마을내 농가로부터 다른 작업수탁은 없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작업수탁을 통해 임대차의 확대로까지 이행될 전망은 없다. 또 이런 의미에서 언제 또다시 개별경영으로 분해될지도 알 수 없다. 차기 갱신시에는 아마도 보조금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조직은 해체되고 개별경영으로서 재생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남아 있는 농가도 적극적으로 경영전환을 도모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기·해체상황에 있는 한국농업, 특히 그 중에서 가족경영이 또한 위기이다.

5. 결론 : 경제위기하의 농업·농촌의 전망

현재 한국은 IMF 관리하에 있는 경제위기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수억제책을 포함한 경제구조조정이 실행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대규모의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현단계 이상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대량의 실업자 중에서 일부는 농촌으로 귀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농업·농촌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고, 오히려 위기·해체에 박차를 가할지도 모른다. 농산물시장은 점점 국제화되어 값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와 농업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농가층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조금 체계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던 농업법정도 그 보조금이 앞으로 기대되지 않아 대부분의 곳에서 해산 내지 폐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도 과잉 설립이라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의 가족경영을 어떻게 위치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소위 '압축형 경제발전'은 '압축형 농업발전'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압축형 농촌해체'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그것은 '20세기말 농업공황'의 현실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경제구조조정이 20세기말 공황의 토대로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적인 농업구조조정은 지구환경문제도 시야에 넣으면서 가족경영을 어떻게 위치 지을까가 과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변모해온 가족경영은 한편으로는 '소농적 차지형태'를 창출시켜 왔다. 이 형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일본도 포함된 '동아시아 소농사회'에 공통된 문제로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것은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소농」이라는 경제학적 명제의 해명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셋째, 가족경영의 현대적 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기초로 어떤 구조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가. 그것은 간단히 농지유동화→규모 확대라고 하는 논리만으로는 안되며, 일차로 지구환경문제도 포함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자본주의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탈피해야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공생의 대지’를 한일공동 내지는 ‘동아시아’ 공동으로 모색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農地改革史研究」.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편. 1989. 「한국농업문제의 이해」 한길사.
- 김영진외. 1982. 「농지임대차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金正鎬외. 1997.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鄭亨謨. 1993. “農地制度에 관한 檢討－農地法制定과 關聯하여－,” 「농협조사월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加藤光一. 1991. 「アジア的低賃金の《基軸》と《周邊》」, 日本經濟評論社, 東京.
- 加藤光一. 1998. 「韓國經濟發展と小農の位相」, 日本經濟評論社, 東京.
- 磯辺俊彦. 1985. 「日本農業の土地問題」, 東京大學出版會, 東京.
- 倉持和雄. 1994. 「現代韓國農業構造の變動」, 御茶の水書房, 東京.
- 今村奈良臣編. 1994. 「東アジア農業構造の展開過程」, 農文協, 東京.
- 梶井功. 1997. 「農業問題その外延と内包」, 農文協, 東京.
- 通井秀行. 1997. 「情報革命と生産のアジア化」, 中央經濟社, 東京.
- 錦谷越夫著作集刊行委員會編. 1979. 「錦谷越夫著作集第1卷・農民層の分解」, 農林統計協會, 東京.
- 朴珍道. 1987. 「現代韓國農民層分解の研究」(東京大學博士論文), 未公刊.
- 宋在晟. 1997. “韓國農地改革前後における地主制の展開と衰退,” 「土地制度史學」, 第154號, 東京.
- Chayanov, A.V. 1986.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Edited by D.Thoner, B.Kerbley and E.F.Smith),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Ellis, F. : Peasant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